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4. 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4. 4. 3.

다. 상정일자 : 제26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4.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가. 제안이유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아동의 실외 놀이 환경이 제약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안 제1조~제3조)
- 이용대상,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이용료 등(안 제4조~제7조)
- 이용 및 입장 제한 사항,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안

제8조~제11조)

○ 위탁운영, 재정지원(안 제12조~제13조)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및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을,
- 안 제4조~제7조까지는 이용대상, 운영일 및 시간, 이용료 등을,
-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이용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탁운영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등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최근 무더위, 폭우, 폭설, 미세먼지 등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만큼 실외활동에 제한이 따르고 부모들은 사설 실내 놀이시설(키즈카페)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사설 놀이시설은 이용료가 비싸 부모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실내 놀이시설 관련 기사에 따르면 키즈카페 평균 이용금액

은 어린이 1명 기준 1만 5천원(제한시간 2시간)·어른 기준 5,000원 선이며, 최근 프리미엄 키즈카페가 생겨나면서 이용금액은 더 높아지는 추세임.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외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삶이 되었음. 또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무더위, 호우, 한파, 대설 등 계절 및 기후변화 등도 아이들의 야외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약화시키고 있음.

우리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 1. 31일 현재 우리구 전체인구 363,679명 중 9세 이하 어린이는 20,536명으로 약 5.45%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은 서울형 키즈 카페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등 극히 적은 시설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이를 종합할 때, 본 조례안은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높다고 사료됨. 다만, 실내 놀이터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생적인 공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아울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입장료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 민간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대응과 민간사업자와 공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 [전문개정 2007. 10. 17.]

2. 자치구별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현황

구별	이용시간	이용료			조례 제정일
		영유아	보호자	놀이돌봄	
중랑구	2시간	2,000	1,000		22.02.14.
도봉구	2시간	2,000	1,000		23.11.02.
동대문구	2시간	2,000	1,000		23.12.28.
영등포구	2시간	3,000	무료	2,000	23.07.06.
노원구	2시간	2,000	1,000		23.12.28.
은평구	2시간	3,000	1,000	2,000	23.11.09.
양천구	2시간	2,000	1,000		22.11.10.
송파구	2시간	2,000	1,000	2,000	23.10.19.
관악구	2시간	2,000	1,000		23.07.06.
마포구	2시간	2,000	1,000	2,000	